

검사기준 제·개정(2009년 하반기)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령 제147호, 2009. 7. 1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 별표 30 제1호의 비고란에 제8호를 신설
 - 8. 나목란 1)의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선박(「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설치의무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2호의2”로 개정한다.
 - 2. 2009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 2호의2. 2010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

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 국토해양령 제147호, 2009. 7. 1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부칙 제2조를 개정
 - 제2조(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중 “2009년 6월 28일”을 “2011년 6월 30일”로 개정

3.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79호, 2009. 7. 10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항만 안에서는 표제의 고시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 등을 선박에 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 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 그러나, 상기 항만 중 해상에 설치된 부이(Buoy)에는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관련 상기 표제의 고시를 개정하여 법적용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4.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 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0호, 2009. 7. 10

- 방오시스템을 제작,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고,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표제에 의한 고시에 따라 성능 시험 및 검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고시에 방오시스템의 성능시험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현행 고시에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

5.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4호, 2009. 7. 14

- 플레저 보트의 선체 구조 및 치수 등은 국제 표준규격(ISO) 적용
 - 허용응력 및 부재치수, 외판에 설치된 창 및 기타 개구 등에 대한 기준 적용
- 선체강도는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시험」으로 가능
 - 길이 6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는 낙하시험을 통하여 선체의 찌그러짐, 크랙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을 경우 합격 판정
-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의 풍우밀 구역에 있는 창구 높이는 100mm 이상을 75m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함
- 플레저 보트의 문턱 높이는 평수구역 50mm, 연해구역 150mm까지 완화 가능하며 또한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장치에 의해 조여지는 폐쇄장치 등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토록 함
- 플레저 보트의 폭로갑판상에 불위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 선박길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완화 적용
 - 선박길이 15미터의 경우 각 현의 방수구 최소면적은 160cm²
- 플레저 보트의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 폐쇄형의 것이어야 하나, 한국산업규격(KS 규격) C형 규격에 적합하면 완화 가능
 - 선체의 피로강도 평가 및 두께측정 범위 확대
 - 화재취약 구역에 선박방화구조기준 확대 적용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성능평가 신설
 - 노령화와 경하중량 증가로 인한 복원성 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의 복원성 시험 실시
 - 기관구역, 여객실과 조리실에 화재탐지장치 설치

6.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7호, 2009. 8. 6

- 낚시어선 등 특정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일종의 지적정보로 인식하고 정부의 안전목적 이외 타 선박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여 정부기관만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는 가격이 높아 소형 선주에게 부담이 됨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추가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기술요건에 적합한 새로운 선박 위치발신장치로서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TRS)를 도입하고자 함

7.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준용요령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5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8.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5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9.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6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0.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4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5.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3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1.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8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6.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6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2.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9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7.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8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3.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0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8.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 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9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14.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1호, 2009. 8. 10

19.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0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0. 위험물 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1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1.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2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3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3.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4,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하기 위해 개정

24.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5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5.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6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6. 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7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7.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8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28.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9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하기 위해 개정

하기 위해 개정

29. 선박기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0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4. 선박방화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5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0.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1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5.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6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1. 목선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2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6.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7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2.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3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7. 잠수선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8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3. 선박구획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4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38. 선박만재출수선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9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39.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0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40. 원자력선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1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41. 선체보호도장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2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42. 선박자동화설비기준 폐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3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폐지함

43.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4호, 2009. 8. 10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4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5호, 2009. 8. 13
 - 기준체계를 조문형태로 변경하여 법령안 형식에 맞춤
 - LSA CODE 개정사항의 반영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품목 신설

45.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3호, 2009. 8. 19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인 부선에는 예선 등 다른 선박과 교신할 수 있도록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를 비치하도록 함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해 재검토 조항을 신설함

46. 선박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2호, 2009. 8. 21
 - 위성항법장치 설치 대상선박은 보정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
 - 다만, 2004. 4. 21.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는 이를 인정
 - 행정규칙 일몰제 반영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7.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3호, 2009. 8. 24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

48.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3호, 2009. 8. 24
 - 현행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의 대상 선박용물건인 위성항법장치(GPS),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및 공기식 매트리스를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의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에 설치가 가능토록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공기식매트리스를 예비검사의 대상품목에 포함
 -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를 예비검사의 대상품목에 포함

49.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제정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26호, 2009. 9. 11
 - 이 지침은 총톤수 2톤 이상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적용토록 함
 - 플레저 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성 기준 및 만재흡수선 표시 지정을 생략함
 -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를 등록도면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함
 - 소형 플레저 보트는 일반배치도 또는 카타로그
 -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플레저 보트는 선체선도,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 플레저 보트의 용도를 “기타선(플레저보트)”로 기재토록 함
- 선체 구조 강도 확인방법
 - ISO 인증업체에서 제작한 경우 인정토록 함
 - 선체 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선체 구조 강도를 인정 함
 -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한 경우
 - 판두께 계측에 의한 강도 확인 및 외국정부 등의 검사이력이 있는 경우
 - ※ 선질별 구조기준에 의한 강도확인 방법을 제외하고 도면승인 생략함
- 기관에 대한 검사방법
 - 기관에 대한 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 시동시험(6회)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0분간 운전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개방검사
 - 기관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경우 등
 - 시동시험(6회)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개방검사
- 항해용구 및 설비의 검사방법
 - 레이더반사기, 자기컴파스, 선등 및 기적이 설비기준에 적합한 효력시험 또는 외국정부 등의 검사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
 - 항해용구중 검사이력 및 증서 등이 없는 경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한 경우 인정(선등은 제외)
 - 동일 모델로서 타 선박에서 관련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건은 인정
 -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플레저 보트에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및 초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및 디지털선택 호출장치) 설치를 면제함

50. 강화플라스틱선(FRP)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9호, 2009. 9. 21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선체 구조 성형공법

- 중 친환경적 최신 공법인 「진공적층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 관련 용어 신설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 (레저용 보트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됨)
- 용어 정의 추가
 - 진공적층법 용어 정의 신설
-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 보완
 - 진공적층법으로 건조한 FRP선을 적용대상에 추가
 - 선체의장 및 선체구조(수밀격벽 등) 준용규정 보완
- 진공적층법에 대한 상세규정 신설
 - 이음부의 겹침폭, 코너 내의 곡률 반경 등 진공적층방법에 대한 성형규정 신설

51.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 2009. 10. 6
 - 현행 「강선의 구조기준」은 선박길이 90미터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고 있어, 90미터 이상의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별도의 구조기준이 필요한 유조선, 산적화물선 등 90미터 이상 전용선박에 대한 구조기준도 신설 필요
 - ※ 현재까지는 길이 90미터 이상 강선 및 전용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시(대형검사기관) 한 국선급 규칙을 적용
 - 용어 정의 추가
 - 구조기준 신설 등에 필요한 ‘선박의 강도 계산용 길이’, ‘격벽갑판’ 등 용어 정의 신설
 - 창구코밍 요건 신설

- 90미터 이상 선박의 창구코밍의 구조 및 강도, 폐쇄설비, 배수장치 등 규정
- 90미터 이상 선박의 선체구조 신설
 - 종강도, 평판용골 및 외판, 기관실, 갑판, 수밀격벽, 선루 등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 전용선박 구조기준 신설
 - 길이 90미터 이상인 유조선, 이중선체유조선, 광석운반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전용선박의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52. 어선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1803호, 2009. 11. 03
 -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험한 어선검사 관련 과태료 부가 기준을 정함
 - 「어선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중 제40조 제1항을 법 제40조로 하여 「어선법」 적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53.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5호, 2009. 11. 18
 -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에 승인된 차량적재도에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 새로운 차량적재도의 승인필요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 기본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으면 유사차종의 차량적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기본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 승인규정 신설
 - 기본차종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최대적재량 허용범위내의 유사차종에 대해 적재가 가능하도록 함
 - ※ 기본차종 : 경형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8톤 및 25톤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용어사용)
- 특수차량과 대형차량에 대한 승인기준 신설
 - 특수한 형태의 차량(굴삭기 등)과 승인받은 차량보다 최대적재량이 큰 차량을 적재할 때는 새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규정
- 차량 고박 기준 완화
 - 썰기뿐만 아니라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 사용허용

54. 선박기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3호, 2009. 11. 30
 - 내연기관의 제조기술 발달로 크랭크축 제조 시 무게는 가볍게 하는 반면 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신기술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 및 두께가 현행 기준에서 정한 치수보다 적어도 실제 시험 결과 강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특수단조 또는 표면 처리 등 특수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 계산 시 강도향상을 고려하여 치수를 산정하도록 함
 - 특수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에 대하여 실제 인장·피로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강도 향상이 있는 경우 치수 경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세계산법에 의한 강도계산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장관(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토록 함

55.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 농림수산부령 제101호, 2009. 12. 14

-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 등을 「어선법」으로 이관하고,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3호 2009. 11. 2.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검사방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어선번호판 부착 면제대상어선
 - 어선표지판에 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선표지판 설치대상 어선에는 별도의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함
 - 어선표지판 설치 어선에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
 - 만재흡수선의 표시가 불필요한 어선과 그 표시가 곤란한 어선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적재하지 않는 어선, 시운전을 위해 항행하는 어선 및 목선 등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어선 등에 대하여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도면승인 등의 신청 절차·검사방법 등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그 신청절차, 검사 준비사항 및 검사방법, 각종 증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해당 어선검사 관련 승인도면, 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 또는 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도면승인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검사 준비사항, 각종 증서서식 및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검사 집행이 기대됨
-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의 면제되는 어선
 - 어선의 규모, 조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계선된 어선 등에 대하여 어선의 검사 및 무동력어선, 길이 24미터 미만 목선 등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면제함
 -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선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 사업장 지정 및 확인업무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기준 등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 인원 등을 갖추고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 용품을 건조·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검사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사업장과 자체검사원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 지정절차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등을 정함

-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는 어선용품 등을 인정하고 그 사업장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우수사업장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어선용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

56.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6호, 2009. 12. 14
 - 소형어선의 정의를 12미터 미만 선박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으로 변경함
 - 선체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선체재료를 명확히 하고,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경우 판두께 측정에 따른 강도시험기준을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기관실 위벽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계선 및 양묘장치에 대하여 규격을 명확히 정함
 -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서 위치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전선의 종류를 명확히 함
 - 취사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설비의 설치요건을 명확히 정함
 -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 이 외의 소형어선은 복원성시험을 하지 않도록 완화함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함

수 있도록 함

- 총톤수 2톤 이상의 낚시어선으로서 최대승선 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만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완화함

57. 어선구조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7호, 2009. 12. 14

- 강선의 구조기준을 정함
 - 「선박안전법」 강선의 구조기준 중 강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을 정함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중 폭로갑판의 창구 코밍 높이를 강선과 동일하게 완화함
- 목선의 구조기준을 정함(제4편)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목선의 구조기준 중 목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정함(안 제7편)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중 알루미늄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58. 어선기관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8호, 2009. 12. 14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선박기관기준」 중 어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 기관설비의 안전성 등 일반사항을 정함
- 내연기관 및 증기터빈 등 원동기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워터제트 추진장치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축계비틀림진동 자료제출 대상 및 기준을 정함
-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보기 및 관장치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기관의 제어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관구역무인화선의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어선이 갖추어야 할 예비품 및 공구의 기준을 정함

59. 어선설비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9호, 2009. 12. 14

- 어선의 구멍설비를 정함
 - 구멍설비의 요건을 정함
 - 구멍설비의 비치수량 및 탑재방법을 정함
 - 구멍설비의 표시방법, 이용 및 정비방법을 정함
- 어선의 소방설비를 정함(안 제3편)
 - 소방설비의 요건을 정함
 - 소방설비의 비치수량 및 비치방법을 정함
- 어선의 거주, 위생, 항해, 조타, 어로, 하역설비 및 비치 대상 어선을 정함
 - 거주·위생설비의 설치 등을 정함
 - 계선설비 및 양묘설비 등을 정함
- 어선의 전기설비를 정함
 - 전기설비의 요건을 정함
 - 발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정함
 - 전로, 전기이용설비, 비상전원 등을 정함
 - 고전압전기설비를 정함
- 어선의 무선설비를 정함

60. 어선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0호, 2009. 12. 14

- 어선복원성 시험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선박복원성기준 중 어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 복원성 적용대상을 종전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어선복원성기준 (제정 1995. 10. 31 수산청고시 제 1995-33호) 에서 정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정함
- 어로선과 비어로선에 대한 표준재화상태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
- 어선만재흡수선 지정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함
-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선박만재흡수선 기준 중 어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

61.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 12. 18
-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함

62.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0호, 2009. 12. 18
-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함

63.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1호, 2009. 12. 18
-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

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함

64.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2호, 2009. 12. 18
-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함

65. 선박보호도장기준 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3호, 2009. 12. 18
-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함

66. 선박법 개정

- ▣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기선의 일종으로 명시하여 향후 이 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고, 최근 수상레저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 개발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이 법의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수면비행선박을 기선의 일종으로 분류함
-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가운데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67. 선박안전법 개정

▣ 법률 제9871호, 2009. 12. 29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 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납후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 조건부 나용선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정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에 맞추어 제한하고 있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제도팀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